

외국인초빙교수임용에관한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초빙교수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외국인 초빙 교수(강사를 포함한다. 이하 ‘외국인 교수’라 한다)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국인 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공 및 교양외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외국인 교수의 임용자격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이 E1-E2(교육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자)로 부여받은 자로서,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소속 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청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외국인 초빙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(개정 2015.06.16.)

1. 해당 학부(과)장, 대학원장, 국제어학원장의 추천(신설 2015.06.16.)
2. 총장의 제청(신설 2015.06.16.)
3. 이사장이 임용(신설 2015.06.16.)

②외국인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5.06.16.)

제5조(구비서류) ①외국인 교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부(과)에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 초빙교수 임용 요청서 1부
2. 이력서 1부
3. 학력, 경력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

②외국인 교수로의 임용이 결정된 자는 여권사본 및 해당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외국인 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
②임용기간의 갱신은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

제7조(책임강의 시간) 외국인 교수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은 별도로 계약한다.

제8조(보수) 외국인 교수의 보수는 초빙교수임용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하

3-2-11~2 제3편 행 정

되 교육경력, 주택제공 여부 등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
제9조(초과강사료) 주당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주택제공) 외국인 교수에게는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그에 합당한 수당 및 일정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퇴직금) 외국인 교수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12조(특별교육 담당) ①이 세칙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인 교수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서의 근무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약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시간강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